제2절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이닌 단체로 구분된다.

1.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원천소특과 국외 원천소특 전체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거소는 주소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정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한다.

-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직업을 기진 자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③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이거나,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 ④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함)에 파견된 임직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를 제한납세의무리 한다.

3. 법인 이닌 단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허기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나 공익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 등)를 제외한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이들 단체가 국내에 주시무소 또는 시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거주지 또는 비거주지로 보는 법인 이닌 단체의 구분은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분	내 용	적용
1 거주자 또는		
기 비거주지로 보이 과세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의 명의로 과세
공동^ነ업⊼ነ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 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제 3 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1.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2.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지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에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특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 4 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1. 소특금액 계산

소득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소득별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으로 각각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대용하는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한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대용하는 실제 증명서류에 의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정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②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인정한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연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

① 근로소특금액 -> ② 연금소특금액 -> ③ 기타소특금액 -> ④ 이자소특금액 -> ⑤ 배당소특금액

다만, 시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10

종 합 소 득 금 액 (-)종 합 소 득 공 제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종합소득산출세액

(-)세 액 감 면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E 11

(-)세 액 공 제

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종합소득총결정세액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특공제는 개개인의 인적 사정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다.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단계 초과누진 6%~38%)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2